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210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진

변론 종결 2020. 5. 22.

판결 선고 2020.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8.자 확인서에 기한 4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27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9년경 일반건조물방화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24, 1339(병합)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는 등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필요했던 합의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 4,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2015. 4. 8.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0.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4. 8.자 확인서(갑 제4호증)에 기한 4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서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피고는 스스로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위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 근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C이 구속되어 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피고나 D에게 위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은 원고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는 하나, D와 C이 가까운 친구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D이 위와 같은 거금을 C을 위해 그냥 증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위 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C이 아닌 피고를 채무자로, D이 아닌 원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④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올 연말까지 2,000만 원을 약속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위 4,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인데, 그렇지 않고 C이 이를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등을 통해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동기였는데, 피고가 위 합의서(갑 제4호증)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원고가 오인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합의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표시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승우

별지